#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30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문진석·정성호·서영석

이정문 • 이연희 • 김윤덕

진성준 • 안태준 • 이성윤

복기왕 • 이재관 • 강훈식

정준호 • 박지원 • 송옥주

이수진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 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90조의2).

#### 법률 제 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을 "정보의 제공방법"으로 한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심의위원회의 조사 · 심의 내용
- 2.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 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품안전처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 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 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 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 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에서 허용하는 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 용 2.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 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 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 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 (2)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정보의 제공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ㅇ 구	정하다
	0 1' -1

\_\_\_\_\_